

학교법인 한가람학원 정관

제정 1971. 5. 8 규정 제 1호
개정 2020. 5. 1 규정 제62호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전문직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고등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한가람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 3조 (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대학교를 설치·경영한다.

1. 진주보건전문대학(교명은 진주보건대학교라 한다)

제 4조 (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진주시 의병로 51에 둔다.

제 5조 (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2 장 자산과 회계

제 1 절 자 산

제 6조 (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 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제 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7조 (재산의 권리) ① 제 6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 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8조 (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과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회 계

제 9조 (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대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제 1항의 대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총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 9조의 2 (예산·결산의 공개) 법인회계 및 대학교회계의 예산·결산을 당해 대학교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되,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까지,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0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 포기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3 절 예산·결산 자문위원회

제13조 (예산·결산 자문위원회의 설치) 삭제

제14조 (위원회의 조직) 삭제

제15조 (위원장 선출 및 직무) 삭제

제16조 (회의) 삭제

제17조 (위원회의 간사 등) 삭제

제 3 장 기 관

제 1 절 임 원

제18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8인(이사장 1인 및 개방이사 2인을 포함한다)
2. 감사 2인(추천감사 1인을 포함한다)

제19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4년
2. 감사 3년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0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② 임기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사립학교법 및 이 정관의 규정에 위반한때
2. 관할청의 해임 요구가 있을 때
3.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3에 의한 법인의 비공개 대상 정보를 공개한 때
4. 법인의 설립이념 및 교육목적을 변경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생을 지도·선동하거나 이를 방조한 때
5. 법인의 중요 추진사업을 반대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생을 지도·선동하거나 이를 방조한 때
6. 총장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이를 방조한 때
7. 법인 및 대학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거나 이를 방조한 때

③ <삭제>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의 2 (개방이사와 감사의 추천 및 선임 방법) 삭제

제20조의 3 (개방이사추천위원회) ①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교평의회에서 추천 하는 자 : 3인
2.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 2인

② 추천위원회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21조 (임원선임의 제한) 법인의 건학이념 및 교육목표에 동의하지 않은 자를 임원으로 선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3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 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4조 (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5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과 대학교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와 대학교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 1호 및 제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과 대학교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와 대학교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6조 (임원의 겸직금지) 삭제

제 2 절 이 사 회

제27조 (이사회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대학교의 총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대학교의 교원 임용은 총장에게 위임한다.)

6. 법인이 설치한 대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교육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명기된 사항의 변경을 포함한다)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 (이사회회의 개최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 (이사회회의 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총장이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0조 (이사회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1조 (이사회 소집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5조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 절 대학평의회

제31조의 2 (대학평의원의 설치) 대학교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회 (이하 “평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1조의 3 (평의회 구성 등) ① 평의회 평의원은 대학교 교원·직원·조교·학생·대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1인으로 구성한다.

②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중임할 수 있으며, 평의원에 임명된 자가 임기 중 그 자격이 상실될 경우 해촉되며, 보궐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학생인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31조의 4 (평의원의 구성 및 정수) 평의원은 법인의 설립목적 및 교육목표에 찬동하는 자로써 다음 각 호의 인원수로 구성한다.

1. 교원 : 1인이상 ~ 5인이내
2. 직원 : 1인이상 ~ 2인이내
3. 학생 : 1인이상 ~ 2인이내
4.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 1인이상 ~ 5인이내
5. 조교 : 1인이상 ~ 2인이내

제31조의 5(기능) 삭제

제31조의 6 (운영규정) 평의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4 절 사학윤리위원회

제31조의 7 (사학윤리강령 준수) ① 이 법인은 법인 및 경영하는 대학교 운영에 있어 “사학윤리강령” [별표3]을 준수한다.

② 이 법인 및 경영하는 대학교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사학윤리위원회 활동에 협조하고 그 결정사항을 준수한다.

제 4 장 수익사업

제32조 (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대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부동산(건물)임대업
2. 서비스업(주차장운영업)
3. 기타 수입증대를 위한 각종 사업

제33조 (수익사업의 명칭) 제32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가람회관을 경영한다.

제34조 (수익사업체의 주소) 한가람회관의 사무소는 진주시 진주대로 1088번길 7(평안동)에 둔다.

제35조 (관리인) ① 제32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복무·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 5 장 해 산

제36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학교법인이나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제38조 (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제 6 장 교 직 원

제 1 절 교 원

제 1 관 임 용

제39조 (임용) 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② “총장 이외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하며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재계약 조건 및 절차 등을 조건으로 정하여 계약제 임용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계약조건 중 근무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수 : 정년까지(본인이 원하는 경우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2. 부교수 : 6년 이내의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3. 조교수 : 3년 이내의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4. 강사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④ 제 3항 제 1호의 정년보장 교수 임용과 관련 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 동의를 앞서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년보장 교원임용심사위원회를 대학교에 둔다.

⑤ 대학교의 부총장 등의 보직은 총장이 보한다.

⑥ 점임·초빙교원의 근무기간은 직급별 계약에 정하는 기간으로 총장이 임용한다.

제39조의 2 (교원의 계약임용제 등) 정관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

1. 근무기간 : 정관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2. 급 여 : 업무의 곤란도, 업적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3. 근무조건 : 교수시간 및 소속학과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다.
4. 업적 및 성과 : 연구실적, 진로상담,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6.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9조의 3 (신규채용 등) 공개전형으로 채용하는 교원임용에 있어서는 당해 대학의 건학이념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로 제한 할 수 있다.

제39조의 4 (종전 규정에 의하여 기간제로 임용되어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교원의 임용)

①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대학교 교원은 근무기간이 종료되어(종전의 사립학교법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제로 임용된 경우의 임용기간을 말한다) 다시 임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정관 제39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한다.

1. 교 수 : 정년까지
2. 부 교 수 : 6년
3. 조 교 수 : 3년

4. <삭제>

② 제1항의 적용을 받는 교원의 재임용에 관한 절차는 39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교원의 재임용 절차와 같이한다.

제39조의 5 (특별채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원자격을 가진 자(외국인 등 제외) 중에서 이사장은 기간을 정하여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1.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3. 임용예정직에 상응한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임용하는 경우
4.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 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5. 국·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을 본 대학교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6. 외국인 임용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채용된 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외국인 교원의 경우 제외)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다만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제 2 관 신분보장

제40조 (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 1호 내지 제 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 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7. 자녀(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
8.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 5호에 해당하게 된 때

제41조 (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40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2. 제40조 제 2호 및 제 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0조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4. 제40조 제 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5. 제40조 제 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0조 제 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각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한다.
- 6의2. 제40조 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월 이내로 한다.
7. 제40조 제 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8. 제40조 제 9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40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42조 (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 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 ③ 제40조 제 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3조 (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40조 제 1호 및 제 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 ② 제40조 제 2호 내지 제 4호와 제 6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4조 (직위해제 및 해임) 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 ②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3.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 ③ 제 1항 또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④ 제 1항 또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 1항 또는 제 2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⑤ 임용권자는 제 2항 제 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⑥ 제 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 1항과 제 2항 제 1호·제 2호 또는 제 3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함께 있을 때에는 제 1항 또는 제 2항 제 2호·제 3호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⑧ 제 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선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제45조 (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 (의사에 반한 휴직·면직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46조의 2 (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46조의 3 (교원의 정년) ① 총장 이외의 교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② 교원의 정년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 퇴직한다.

제 3 관 교원인사위원회

제47조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총장을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8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총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를 임용하고자 할 때의 동의에 관한 사항
2. 총장이 부총장 등의 주요 보직자를 임용하고자 할 때의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
3. 재직교원(2002.1. 1현재) 재계약 심사기준 및 절차, 업적평가의 기준과 방법 결정에 관한 사항
- 4 기타 총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사위원회가 제1항 제1호의 임용동의를 할 때 업적 및 성과 등에 관한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49조 (인사위원회의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총장이 임용하는 5인의 교원으로 조직한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50조 (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임용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1조 (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2조 (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한다.

제53조 (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대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용한다.

제54조 (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 2 절 교원징계위원회

제55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서 임용권자가 임명하며, 외부위원 1명을 포함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56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7조 (징계의결의 기한)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성희롱 행위 등 성(性)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1차에 한정하여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 절차의 진행이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에 따라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58조 (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58조의 2 (위원의 기피)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용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용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8조의 3 (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59조 (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0조 (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가 제 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용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④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1조 (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할 때에는 징계사유의 행위 유형, 정도, 징계대상자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요구의 내용, 과실의 경중, 그 밖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1조의 2 (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징계사유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3.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을 한 경우

제62조 (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그 임용권자가 임용한다.

제63조 (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3 절 재심위원회 삭제

제64조 (재심위원회) 삭제

제65조 (재심위원회의 구성) 삭제

제66조 (재심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삭제

제67조 (재심위원회의 심사) 삭제

제68조 (심사의 범위) 삭제

제69조 (재심청구인의 진술권) 삭제

제70조 (재심청구의 취하) 삭제

제71조 (재심위원회의 결정) 삭제

제72조 (재심심사결정서 작성) 삭제

제73조 (재심심사 결정서의 송부) 삭제

제74조 (재심결정의 효력) 삭제

제75조 (위원수당 등) 삭제

제76조 (재심위원회의 간사 등) 삭제

제77조 (운영세칙) 삭제

제 4 절 직 원

제78조 (자격) ① 직원은 일반직, 계약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직 : 사무 또는 기능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2. 계약직 : 업무상 필요로 하여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재계약 조건 등을 정하여 임용한 직원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대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 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에 따라 자격증, 면허증, 능력 등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④ 재직 중인 직원이 제 2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79조 (임용) ① 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승급,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 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대학교 소속 직원은 총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80조 (복무)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제81조 (보수) 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 의 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제82조 (신분보장) 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제82조의 2 (직원의 정년) ① 정년은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다만, 57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 정년퇴직일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제83조 (징계 및 재심청구) ① 직원의 징계 및 재심청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직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제 7 장 직 제

제 1 절 법 인

제84조 (법인사무 조직)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두며 국장을 보한다.

② 법인사무국에는 사무과와 회계과를 두며 각 과장을 보한다.

③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절 전문대학

제85조 (총장 등) ① 대학교에 총장을 둔다.

-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 ③ 대학교에 1인의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 ④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6조 (하부조직) ① 대학교에 교학처, 사무처, 기획대외협력처를 둔다.

- ② 각 처에는 처장을 두며 필요시 복수의 처장을 둘 수 있다.
- ③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86조의 2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 ①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을 둘 수 있다.

- ② 산학협력단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③ 학교기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87조 (부속시설 등) ① 대학교에는 필요한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을 둘 수 있으며 학칙으로 정한다.

- ② 부속시설 등에는 책임자를 두어 이를 관리할 수 있으며, 책임자 및 분장업무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8조 (도서관) 삭제

제 3 절 정 원

제89조 (정원) 법인 및 대학교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 8 장 보 칙

제90조 (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경남일보에 공고한다.

제91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92조 (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직 위 | 성 명 | 생 년 월 일 | 임기 | 주 소 |
|---------|-----|-------------|----|-----------------|
| 이사(이사장) | 정영수 | 1922. 7. 5 | 4년 | 진주시 평안동 303 |
| 이 사 | 김은영 | 1925. 11. 7 | " | " |
| " | 김용숙 | 1926. 10. 6 | " | 진주시 중안동 1-14 |
| " | 박영재 | 1932. 5. 29 | 2년 | 진양군 문산면 소문리 105 |
| " | 박 철 | 1910. 5. 4 | " | 진주시 봉래동 146-2 |
| " | 정원수 | 1921. 1. 15 | " | 진주시 상봉서동 839-5 |
| 감 사 | 원진수 | 1920. 11. 8 | " | 진주시 대안동 8-1 |
| " | 정재화 | | 1년 | |

부 칙

이 정관은 1971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75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7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직원으로 임용된 자 중 제47조 제 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정관 시행이후 6월 이내에 당연 퇴직된다.
- ③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사무조직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사무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 ④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2의 각 직급의 임용된 자는 이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정관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79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1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1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대학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총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당해 총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 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④ (총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기없이 임명된 대학교육기관의 장의 임기는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 ⑤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대학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 위원 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 ⑥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8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원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되어 근무하는 교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 ② (법인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 중인 이사는 그 임기만료시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정관은 1986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이 정관은 1991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총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 ③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중인 징계 및 재심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④ (총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되어 근무하는 총장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⑤ (인사위원회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전문대학의 인사위원회 위원 중 이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정관은 1991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3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5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서무과장과 교무·학생과장은 이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정관은 1997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199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이 정관은 1999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규정의 개정) 교직원 보수규정 제1조 중 “진주간호보건전문대학”을 “진주보건대학”으로 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0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1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계약제 임용에 관한 적용) 제39조의 개정 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신규 채용되는 자부터 적용하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직중인 교원으로서 임용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자의 경우에는 교원 임용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조건을 달리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 제39조의 3 및 제39조의 4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9조의 4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② (채용심사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정관 제39조의 3 제2항의 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대학교원의 채용심사부터 적용한다.
- ③ (채용공고에 관한 적용례) 정관 제39조의 3 제3항의 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공개되는 신규채용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4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정관의 시행 당시 기 선임된 감사의 임기는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유지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6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06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제2조(개방이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의2 에 따라 선임된 개방이사는 이 법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
- ③ 제3조(총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9조에 따라 선임된 총장은 이법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 (시행일)이 정관은 2009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② (규정의 명칭개정) 학교법인 및 진주보건대학에 관련된 모든 규정 중 “학장”을 “총장”으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이 정관은 201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이 정관은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② (규정의 명칭개정) 학교법인 및 진주보건대학에 관련된 모든 규정 중 “진주보건대학”을 “진주보건대학교”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이 정관은 2012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이 정관은 2012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이 정관은 2013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이 정관은 2013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이 정관은 2014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 (규정의 명칭개정) 학교법인 및 진주보건대학교에 관련된 모든 규정 중 “임면”, “임명”을 “임용”으로 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5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82조의 2의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8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9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제2조(경과조치) [별표2]에 따른 직급 조정시 이전 직급의 경력을 포함하여 해당 직급의 경력으로 산정한다.

1-0-1~24 법 인

[별표 1] <제89조 관련>

법인 직원 정원

계 1명

일 반 직 1명

[별표 2] <제89조 관련>

진주보건대학교 직원 정원

| 직 급 별 | 정원 | 비 고 |
|-------|----|-----|
| 총 계 | 27 | |
| 1급 | 1 | |
| 2급 | 4 | |
| 3급 | 4 | |
| 4급 | 9 | |
| 5급 | 9 | |

[별표 3] <제31조7 관련>

사 학 윤 리 강 령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 사학은 나라와 겨레의 발전을 선도해 왔다. 이처럼 빛나는 전통을 이어 받은 우리 사학은 지금, 새 세기의 문명사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지식기반 사회를 선도할 창의적이고 도덕적으로 성숙된 인재를 양성할 역사적 책무를 부여받고 있다.

이에 우리 사학경영자 일동은 교육입국의 사명감을 다시 한 번 가다듬고, 사학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더욱 드높이고자, 뜻을 모아 사학윤리강령을 채택한다.

우리는 양심과 긍지를 가지고 이 강령을 준수하며, 이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권면과 제재로 이를 자율적으로 시정해 나아갈 것을 다짐한다.

- 건학 정 신 : 우리는 사학의 뿌리가 숭고한 건학정신에 있음을 명심하며, 오로지 그 높은 뜻을 계승하고 실현하는 일에 헌신한다.
- 공 공 성 : 우리는 사학경영에 있어서 학원내외의 개인이나 집단의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공공성의 원칙을 존중함으로써 교육복지이념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 자 주 성 : 우리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사학의 본질을 침해하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단호하게 배격하며, 자율적으로 교육방침을 실천하여 사학의 특수성을 앙양한다.
- 경영합리화 : 우리는 사학경영을 합리화·효율화하고, 모든 교육자원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보호함으로써, 교육효과를 극대화하는 일에 우선적인 노력을 경주한다.
- 화합·협력 : 우리는 사학 구성원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화합·협력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며, 모든 구성원의 정당한 권익이 존중되도록 노력한다.